

시 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88
결재일자	201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안전총괄과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팀장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input type="checkbox"/>	
전 문 자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	
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	
사 회 적 배 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input type="checkbox"/>	■	
선 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	
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input type="checkbox"/>	
타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	
바 른 우 리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input type="checkbox"/>	■	

「2016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도시시설물, 안전사각지대, 안전문화 활동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굴 및 보완 조치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국민안전처)
- 추진배경
 -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의 위협에 대비
 -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고령자, 저소득층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대비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라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II 추진개요

- 진단기간 : 2016.2.15.~4.30 (75일간)
- 진단주체 : 시설관리부서 (본청 각 부서 + 자치구)
- 진단대상 : 43,552개소 (2015년 기준)

수자원	에너지	산업안전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4,193	523	368	10,115	3,973	16,020
교통안전	교육안전	보건위생	정보통신	관광레저	기 타
1,367	82	940	912	77	3,278

※ 2015년 기준이므로 2016년 진단대상은 가감이 있을 수 있음

Ⅲ

세부추진계획

1. 추진체계

- 명 칭 : 서울안전관리추진단
- 단 장 : 행정2부시장
- 부단장 : 안전총괄본부장
- 구 성 : 3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 체계도



2. 진단대상

- 구조분야(Hardware)
 - 위험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별 대상시설 등의 C·D·E 등급 시설, 해빙기 점검시설 등
 - 사각지대 : 신종 레저스포츠, 캠핑장, 낚시어선, 자전거도로, 소규모 공연장, 지하상가, 공동구 등
 - 기타 위험물 시설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 비구조분야(Software)

- 시 부서·자치구 소관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
- 시 부서·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 작성 및 활용 여부
- 안전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민 신고 및 제안 검토
- 안전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수립·이행, 조직·인력 확보 등

3. 진단방법

하드웨어 점검

□ 민관합동점검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사각지대, 표본점검 대상
 - 위험시설 등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시설은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주체 : 부서별 주관
 - 민간전문가, 공공기관·단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팀에서 점검
- 결과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 점검 실시

□ 자체점검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은 부서별로 자체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 관리부서별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을 선정하되, 기준 설정 시 중요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자체점검 안내 : E-mail, Fax,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

- 자체점검 대상은 10% 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노후도, 과거 점검결과,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방법 : 부서별 주관

- 자체점검 대상시설(공공+민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서별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결과조치 :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관계기관에 보고

※ 추진상황 보고 : 중앙부처 관리대상 시설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단체에서 자체점검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 관리대상 시설은 부서 및 자치구별로 입력

소프트웨어 점검

□ 일반국민대상 공모

- 공모방법

-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문고 웹 및 앱, 또는 e-mail 제안 창구를 개설, 일반국민 대상 제안 실시

- 추진방안

- 대진단 홍보시 제안모집 집중 홍보, 채택시 포상 실시

□ 전문가 기획제안

○ 필요성

- 시민들의 일반신고 만으로는 전문적인 신고나 제안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제안 참여 유도

○ 추진방안

- 대진단기간 안전관련 전문가 집단 대상 「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 실시
- 공모 안내는 안전처에서 작성·제공 예정인 공모안내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부서별 안전관련 민간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제안 유도를 위해 적극 홍보 및 권장
- 제안 접수는 안전총괄과로 하고 접수시 자체 처리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이송

□ 안전기준 신설 및 강화

○ 대상

- 안전점검, 행정처분 및 처벌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사항
 - * 신종레저스포츠(짚라인, 번지점프(안전기준미비)), 캠핑장(법시행이전), 낚시어선(처벌규정 시행이전), 자전거도로(입법 중, 미발효: 국회의원 입법발의 국회심의중) 등
-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동일유형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분야

○ 점검방법

- 자체 착안 사안 및 안전신고, 전문가 제안,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발굴,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마련
- 각 부서별 점검대상을 선정 전수 민관합동점검으로 철저한 진단 실시, 개선방안 마련

4. 민간 분야 책임강화

□ 엄격한 진단 및 철저한 사후관리

○ 필 요 성

- 주로 민간분야에서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점검 수행, 민간부문의 재난관리 책임 강화 필요

○ 신상필벌

- 형식적 점검을 수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나, 형식적 점검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자에게 책임 부과

○ 행정명령

- 민관합동점검 시 추가진단 또는 긴급 보수·보강 필요 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보수·보강 명령 시행

□ 자금지원 및 안전경영의식 확대

○ 보수·보강 자금 지원

- 중소·중견 기업이 안전진단을 통해 노후시설 교체, 신규 안전설비 투자시 필요한 자금 지원 활성화

○ 안전 경영 인식 확대

- 민간의 자발적 안전진단 참여 확대를 위한 안전인식, 선진 안전진단 기법 확산

5.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 예정*(~'16.1월 별도 시행)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 시스템 사용 매뉴얼 별도 발송 예정

- 관련 부서는 조치계획, 조치결과 등에 따라 관련자료(예산) 입력 관리

- ※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수·보강 시급시설 및 안전투자 연계과제 발굴

- 데이터 입력은, 국비, 특교세 산정의 기초자료이며 입력하지 않을 경우 국비나 특교세 배부에서 제외할 예정

6.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6.2.15.~4.30) 중 중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 실시
 -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 시 및 자치구
 - 시 안전총괄과 및 시설안전과 → 자치구 재난관리부서
 - 시 점검분야별 관리 부서 → 자치구 점검분야별 관리 부서
-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IV

행정사항

□ '각 부서 및 자치구 → 시설안전과, 안전총괄과' 보고서 제출

시설안전과 : 구조분야(Hardware)

-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안전총괄과 : 비구조분야(Software)

- ◆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 사항,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 ◆ 안전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민신고 및 제안 검토
- ◆ 안전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조직·인력 확보 등

- 소관부서 및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 취합 제출 : '16.2.5.(금)
- 소관부서 및 자치구별 추진상황 중간보고서 제출 : '16.3.15.(화)
- 소관부서 및 자치구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16.5.4.(수)



- 구조분야는 안전점검팀에서 각 부서 자료 취합 및 정리 제출
- 비구조분야는 안전총괄과에서 각 부서 자료 취합 및 정리 제출

□ 홍보계획 수립 및 해빙기 추진지침 시행

- 市 안전총괄과 및 자치구는 세부홍보계획 수립 추진(별첨3)
- 해빙기분야는 추진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별첨4)

별첨1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시설 현황

분 야	대 상	시설현황	분 야	대 상	시설현황
계		43,552			
수자원분야 (4,193)	하천	27	건축물분야 (16,245)	공동주택	11,909
	농업용저수지	6		단독주택	1,170
	하수도	4,160		대형건축물	2,855
		공공청사(지방)		687	
에너지분야 (536)	민간가스시설	94	교통안전분야 (1,369)	교량	269
	전기사용자설비	38		터널	37
	가스충전소	155		육교	144
	가스판매소	121		지하도	175
	가스제조소	104		지하도상가	52
	주유소	43		철도시설	625
	석유판매소	16			
산업안전분야 (408)	국가산단	19		교육안전분야 (110)	대학교
	건설공사장	408	청소년수련시설		46
취약계층분야 (10,126)	어린이놀이시설	5,065	보건위생분야 (988)	종합병원	47
	어린이보호구역	177		일반병원	335
	노인시설	1,394		장례식장	15
	아동시설	208		대형숙박시설	460
	장애인시설	245		대형목욕시설	152
	어린이집	2,937			
	사회복지시설	103			
다중이용시설 (4,006)	화재경계지구	122	개인정보통신분야 (912)	행정전산망	714
	쪽방촌	23		통신시설	19
	산후조리원	97		통신망관리	117
	고시원	529	관광레저분야 (77)	호텔	51
	전통시장	152		무도장	17
	도매시설	80		수상레저시설	11
	판매시설	120	기타 (3,930)	대형광고물	1,241
	백화점	13		급경사지	673
	대형할인매장	36		노후주택	806
	극장	22		축대옹벽	488
	영화관	33		승강기	555
	공연장	63		산사태위험지역	225
	기타체육시설	1,307			
	종교시설	1,462			

별첨2

안전진단 점검분야별 소관부서 현황

번호	점검분야	주요 진단(점검) 대상 및 내용	소관부서
1	수자원 분야	하천, 빗물펌프장, 방재시설, 유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등	하천관리과
2		농업용 저수지(농어촌공사 관리, 지자체 관리)	민생경제과
3		지하수, 한강수중보, 하수도(하수관 등), 물재생센터, 하수도 시설 등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상수도, 정수시설 등	상수도사업본부
4	에너지·자원분야	전기시설(발전시설, 배전시설, 변전소, 전력거래소 등)	녹색에너지과
5		가스시설(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등), 석유비축시설, 판매소 등	
6	산업안전 분야	산업시설	경제정책과
7		자원회수시설, 주차장시설	자원순환과, 주차계획과
8		유해 화학물 관련 시설(제조공장, 취급소, 사업장, 저장소 등) 위험물 관련시설(저장소, 제조소, 취급소), 대학교 실험실	예방과
9			
10	건설공사현장, 지하철 공사장	건축기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11	취약계층 안전분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총괄과
1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관리과
13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어린이집, 노숙인, 요양 등)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14	다중이용 시설 안전분야	화재위험시설·지역(화재경계지구, 쪽방촌, 고시원 등)	예방과
15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과
16		유통판매시설(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민생경제과
17		공연전시시설(극장,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정책과
18		체육시설(스키장, 골프장, 실내체육관, 경마·경륜·경정 등)	체육정책과
19	문화재,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기도원), 대피시설	역사문화재과, 민방위담당관	
20	건축물 안전분야	건축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건축기획과
21		공공청사(시청사 등)	총무과
22		시책법상 1,2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위험시설 해빙기 등 재해 취약시설	시설안전과
23		대테러 취약시설(초고층 소방 등)	재난대응과
24	교통안전 분야	도로시설(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등), 공동구	교량관리과, 도로시설과, 보도환경개선과
25		철도시설(교량, 터널포함), 역사, 사·궤도, 교통사고 위험지역, 지하철, 공동구 등	교통정책과
26	교육안전 분야	교육시설(유치원, 초·중·고·대학), 기숙형 학원시설	교육정책담당관
27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담당관
28	보건·위생 안전분야	병원, 장례식장	보건의료정책과
29		공중위생시설(관광호텔을 제외한 대형 숙박시설, 대형 목욕시설)	생활보건과
30	사이버 안전분야	행정전산망(위탁관리 포함)	정보기획담당관
31		통신망(통신시설, 통신망관리, 해저케이블,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2	관광·레저 안전분야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 관광객이용시설, 유원시설 등	관광정책과
33			
34	기타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건축기획과
35		한강 수상(레저), 수질, 선박, 공원, 캠핑장, 시설 등	한강사업본부
36		급경사지, 산사태위험 지역	산지방재과
37		외식업, 축산, 농산물, 가축위생, 방역, 사료 등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37		목외광고물(간판 등)	도시빛정책과

※ 위 분야 외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각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소관사항 등은 자체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개요

- 대진단기간 : 2016. 2. 15. ~ 4. 30.

※ 매년 2월~4월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 국민의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 참여기관 : 중앙부처, ㉞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등

- 중점사항

- 안전신고 생활화를 안전문화 운동으로 확산
- 국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진단 내실화
-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각지대 집중점검
- 안전산업 수요창출 및 기존 안전산업 육성과제 활성화, 신규육성산업 발굴 등

□ 홍보방향

- 안전대진단 추진사항 홍보강화

-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체계 확립을 위한 총력 홍보 실시
- 국민참여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 민관합동점검 시 협력, 시설관리 주체 자체점검 등 중점안전진단 사항 등을 집중 홍보

- 국민과 함께하고, ‘㉞ 국민이 참여는 안전신고’ 홍보

- 일상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 신고하도록 홍보 강화
- 국민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요령” 안내

- 참여기관 안전대진단 일정 및 소관별 추진사항 집중 홍보

- 지역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진단 집중홍보
- 국민참여 안전진단, 민관합동점검, 시설관리 자체점검 등 일정별 안내

- 국가안전대진단 체계적 습득을 위한 홍보 추진

-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대상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 각종 교육(민방위, 예비군교육, 운전면허 등 각종 안전교육)시 안전신문고 홍보
- 대진단 기간중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기관、단체별 일제 캠페인 전개

□ **집중 홍보기간 설정 운영** : `16. 2. 1. ~ 4. 30.

- 안전대진단 홍보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 계획수립 및 시행
- 모바일 웹(SNS, QR코드) 등 온라인 홍보 강화
- 방송, 신문, 전광판, 홍보물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방안 마련 및 홍보 실시

□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전신문고” 적극 홍보**
 - “국민의 안전신고 생활화”를 주제로 안전문화 운동으로 확산
 - 민·관 공동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릴레이 운동 지속 전개 등
 - 국민 참여 체감형 홍보(안전신고 이벤트 등)로 참여확대 및 위험 요인 신고 처리 사항 피드백
- **안전관리 전문가 단체 및 공사·공단의 시니어그룹*에 신고 및 제안 유도**
 - 파급효과가 큰 신고 및 제안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은퇴자들은 자체모임을 구성하고 있으며 ‘15년 대진단시 전문가로 참여
- **관련단체(재난네트워크, 의용소방대 등)회원들이 안전신문고 “앱”다운로드 캠페인 전개**
-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 고속휴게소, 터미널 등 공중화장실에 안전신고 홍보스티커 부착**
- **반상회소식지, 교육청(학교)소식지, 마을앰프, APT·사내 자체 방송 등 이용**

□ **국가안전대진단 인지도 증대방안**

- 유치원,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동영상 상영 및 가정통신문 발송
- 민간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 등 안전대진단 안내 및 참여 서한 발송
- 국세, 수도세,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고지서 홍보
- 전화 연결음 홍보
-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 포스터, 리플릿, 플래카드, 입간판 설치
- 국가안전대진단 온라인 이벤트 추진 국민참여 확산

필요성

-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 발생
- 계절 전환기 동결, 융해는 토압, 수압 증가 등으로 지반침하, 변형, 변위 등을 발생시켜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사고 발생
 -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등 설계, 시공불량 등은 ‘일반 안전사고’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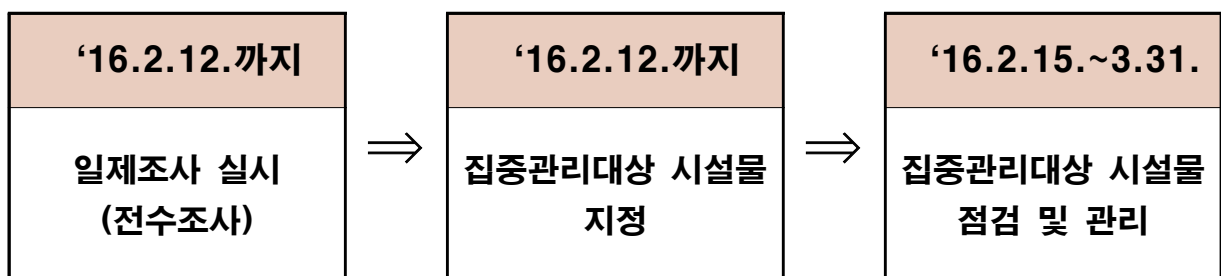
해빙기 추진방향

- 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는 국가안전대진단 한분야로 포함시켜 추진
 - ※ 국가안전대진단 시작일은 ‘16.2.15일부터이나 해빙기 대상 시설물에 한해 일제조사 결과는(12월~16.2월중순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적으로 인정

최근 6년간 해빙기 사고현황

- 최근 6년간 총 17건이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1명 인명피해

추진방법



☞ 안전 대진단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부서명 : ○○○○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본부 △△과 6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33-7530, 휴대폰 번호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

○

○

소요 예산(예산 필요시)

※ 예산 확보방안 포함하여 작성

○

○

향후 추진일정

○

○

○

I. 점검대상 시설 현황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공공+민간+자체)	민관합동 점검		자체점검
			공공시설	민간시설	
보건위생	종합병원	600	500	100	
	장례식장	300	100	200	

II. 추진체계

○

III.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1. 민관합동점검 추진계획

○

2. 자체점검 추진계획

○

3. 안전사각지대

4. 법·제도 선진화과제 발굴

5. 안전진단과 산업연계 강화

IV. 홍보계획

V. 향후 추진일정
